

## 2008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 확정

- 초고층 건축물 설계시 반영하는 지진하중이 외국기준의 연약지반 영향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어 국내의 연약지반심도(최대 30m)를 반영한 지진하중 개정
-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증가에 대비하여 하천횡단교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, 교량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

□ 국토해양부는 교량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초고층 건축물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정비계획을 2008.5.14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
※ 건설공사기준은 국고보조금과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학·협회의 자체예산으로 정비

□ 이번에 정비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은 건축구조설계기준, 도로교설계기준,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,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, 강구조설계기준 5종이다.

※ 건설공사기준정비대상 선정기준

- 정비된 지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
- 신기술, 신공법 등 반영이 필요한 기준

□ 이번에 개정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건축구조설계기준 :

- 선진 내진기술 및 국내환경을 반영한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기준 개정
-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선진 내풍설계기준 반영
- 강구조 및 목구조에 내진상세조항(접합부설계, 기둥설계 등) 반영

○ 도로교설계기준 :

-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증가에 대비하여 하천횡단교량에 대한 기준강화

- 교량에서 화재발생시 구조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

- 소화전 횡단교량에 대한 다리밑 공간 여유고 기준 정립

- 해상교량 증가에 대비한 선박충돌하중에 대한 기준정립

○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:

- 자재의 국제규격화, 국내의 기준변화 및 전기화재에 대비한 케이블, 보호기기에 대하여 최신 기준 반영

○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:

-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내용 보완, 설비이용의 고효율화, 에너지 절감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기준 마련

○ 강구조설계기준 :

- 세계적인 추세인 하중저항계수설계법(LRFD)에 근거한 강구조설계기준 마련

- 도로교, 철도교 등에 대한 강구조설계기준 정비

□ 이 기준들은 금년 6월 개정에 착수하여 2009년에 완료 예정임.

※ 추진현황 및 계획

- 2008년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에 대한 정비협의회 개최 : 2008.4.16

-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심의 : 2008.5.14

- 정비계획시달 및 국고지원 : 2008.5

- 건설공사기준 정비 착수 : 2008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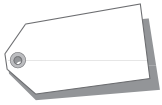
## 참고자료

### 건설공사기준 및 관리주체현황

관리주체	시 공 기 준	설 계 기 준	소관부서
한국콘크리트학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콘크리트표준시방서('03.5.개정)(개정중)</li> <li>- 내구성편('04.5.제정)</li> <li>- 유지관리편('05.3.제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('07.9.개정)</li> </ul>	기술안전정책관
대한건축학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공사표준시방서 ('06.1.개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구조설계기준 ('05.3.개정)</li> </ul>	도시정책관
한국지반공학회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조물기초설계기준 ('02.11.개정)(개정중)</li> </ul>	기술안전정책관
한국강구조학회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구조설계기준 ('04.3.제정)</li> </ul>	기술안전정책관
한국지진공학회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진설계기준연구('08.2.제정)</li> <li>- 도시철도, 공항('03.1.개정)</li> <li>- 지하공동구('04.6.제정)</li> </ul>	기술안전정책관
한국건설가설협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설공사표준시방서 ('06.12.개정)</li> </ul>	-	기술안전정책관
한국철도시설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철도공사전문시방서 - 토목편('04.12.개정)</li> <li>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 - 건축편('07.2.제정)</li> <li>- 궤도편(제정중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철도설계기준 - 철도교편, 노반편('04.12.개정)</li> <li>- 전철전력편, 통신편, 신호편(제정중)</li> </ul>	철도정책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철도공사전문시방서 ('03.4.개정)</li> <li>- 궤도편('04.4.제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철도설계기준 - 노반편('05.9.개정)</li> </ul>	철도정책관
서울특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시전문시방서 ('06.9.개정)</li> </ul>	-	서울특별시
한국농촌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어촌정비공사전문시방서 - 토목편('00.12.개정)</li> <li>- 건축편('03.8.제정)</li> <li>- 기계전기편('03.8.제정)(개정중)</li> <li>농업토목공사표준시방서('99.12.제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('07.개정)</li> </ul>	농림수산식품부
대한주택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건설공사전문시방서 ('07.12.개정)</li> </ul>	-	주택정책관
한국토지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공사전문시방서 ('07.12.개정)</li> </ul>	-	토지정책관
한국도로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- 토목편('04.12.개정)(개정중)</li> <li>- 건축편, 기계설비편, 전기편, 조경편('05.12.개정)</li> </ul>	-	도로정책관
기술안전정책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('04.12.제정)</li> </ul>	-	기술안전정책관
한국시설안전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('06.4.제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('06.4.제정)</li> </ul>	기술안전정책관
행복도시건설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행복도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('07.11.제정)</li> </ul>	-	행복도시 건설청

전체 건설공사기준(49종) 중 우리부에서 관리하는 33종\*의 건설공사기준을 3~5년 주기로 정비

\* 건설공사기준 총 49종(표준시방서 : 18종, 전문시방서 : 11종, 설계기준 : 20종) 중 타부처 소관(8종)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문시방서(8종)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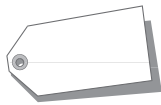


## 「건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 건축행정절차 간소화, 대지안의 공지 및 PC방 면적기준 완화 -

- 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·투명화를 위하여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(e-AIS)제도를 활성화 하며,
-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,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견폐율·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,
-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%를 소비하는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,
- 물놀이형시설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·철도시설·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「건축법시행령」중 일부개정령안을 3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.
- 그 주요내용을 보면,
  -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·투명화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(e-AIS)의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축·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.
  -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,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폐율·용적률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·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며,
  -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

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건축물과 건축물의 연결통로 너비를 안전한 피난활동을 위한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형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블록단위 건축에 의한 지하주차장의 활용 등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지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됨.
  -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, 도로너비, 간선시설 수용능력,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,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.
  -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%를 소비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하고, 성능등급 인증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.
  - 그 밖에,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 단위·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며, 주거환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(PC방)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
- 이번 입법예고안은 3월20일부터 4월9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.



## 국가 주요시설물, 상태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

### - '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·시행규칙' 개정(안)입법예고 -

지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제정된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

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·시행규칙개정(안)」이 5. 16일 입법예고 되었다

□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 실시

- 그동안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상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점검 등의 주기를 정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부담가중 및 시설물관리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으나
- 시설물의 안전등급(A~E)에 따라 실시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※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실시주기변경

- A등급 (1년 연장 진단 5년→6년, 점검 3년→4년)
- D·E등급(1년 단축 진단 5년→4년, 점검 3년→2년)

#### ② 시설물 대상범위를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·강화

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시설물중 절토사면의 경우

대상범위를 연직높이 50m이상에서 25m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시설물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·강화함

####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등록요건 개선
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기준변경에 따라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
-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자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종합분야를 신설하여 등록분야 수에 따른 기술자 수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안전진단을 예방

#### ④ 등록요건의 변경신고 대상 강화 및 등록요건 보완 기회부여

-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, 기술인력, 장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
-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 등록요건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 등록 관련 사후 업체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

□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5일까지 수렴한 뒤,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.